

<p>正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 (11時 08分)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管理局長 柳根夏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.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提案經緯를 말씀드리면,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이 93年 11月 29日 第33回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審議 議決되었으므로 이를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第14條第2項에 依據, 서울特別市議會 文化教育委員會에 提案하는 것입니다.</p> <p>改正事由는 高等學校 入學資格 및 高等學校 卒業 學力檢定考試手數料와 서울特別市 公立學校 教師任用候補者 選定公開銓衡 應試手數料가 각각 1萬원과 2萬원이 되었고, 10원권이 使用用途가 없어졌으므로 收入證紙의 種類를 調整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, 10원권을 廢止하고 1萬원권을 新設하는 것이며, 이 條例案을 提案하는 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5條에 根據한 것입니다. 參考로 新·舊對照表 別紙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.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告)</p> <p>1. 제안경위</p> <p>본 조례(안)은 1994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	<p>2. 제안사유</p> <p>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와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공개전형 응시수수료가 각각 10,000원과 20,000원이 되었고, 10원권이 사용용도가 없어졌으므로 수입증지의 종류를 조정하고자 함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가. 10원권 폐지 나. 10,000원권 신설.</p> <p>4. 근거</p> <p>지방자치법 제15조-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중개정할 수 있다.</p> <p>5.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세입금중 입학시험료, 검정수수료, 제증명수수료, 기타 수수료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, 그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, 50원, 100원, 300원, 500원, 1,000원, 5,000원권 7종임. 수입증지 중 10원권은 '92년도, '93년도 수입증지로 매각된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, 각종 수수료에도 사용용도가 없어진 10원권을 폐지하고, '91.10.24.공립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응시수수료가 20,000원으로 결정되고, '93.2.27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가 4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변경책정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,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게 10원권을 폐지하고 10,000원권을 신설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됨. <p>.....</p> <p>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質疑 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. 質疑하실 委員 계시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마치겠습니다.</p>
--	--